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의4서식] <개정 2025. 12. 26.>

#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

| | | |
|---|---|---|
| 납부자 | 성명 | |
| | 주소 | |
| | 사업장 소재지 | |
| | 상호 또는 명칭 | |

폐기물부담금의 내용

| 연도(분기) | 발행번호 | 납부기한 | 금액 | 미납 여부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
| | | | | |
| 징수유예(기간 연장) 기간 | | 20 . . .부터 20 . . .까지 | | |

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

| 횟수 | 연도(분기) | 발행번호 | 분할납부기한 | 분할납부금액 | 미납 여부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
징수유예(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) 취소 금액 내용

| 횟수 | 연도(분기) | 발행번호 | 납부기한(분할납부기한) | 금액(분할납부금액)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
| | |
|---|---|
| 징수유예 취소 사유 | |

귀하에게 제 호(20 . . .)로 승인한 징수유예(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)를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